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2021가합538072 부당이득반환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모두투자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3. 판결.결정내용	원고일부승소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의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증권 양수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3.12.08.
7. 확인일자	2023.12.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판결로써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며, 자본금 대비 판결 금액에 따른 손실금액은 당사 경영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